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1회 변경)

2015. 3. 3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주식회사 대한항공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2조 (정의) 2

제2장 기본약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6
제4조 (무상사용기간) 6
제5조 (본 시설물의 귀속) 6
제6조 (위험부담) 7
제7조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의무와 권한) 7



제3장 실시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제8조 (총사업비) 7
제9조 (총사업비의 변경) 8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8
제11조 (행정절차 추진) 9
제12조 (공사의 착수) 9
제13조 (공사기간) 9
제14조 (건설사업이행보증) 10
제15조 (지체상금의 납부) 10
제16조 (시설설치 완료기한) 10
제17조 (권한의 위탁 또는 대행) 10
제18조 (보험가입) 11

제19조 (민원처리)	11
제20조 (공사중 안전관리)	11
제21조 (준공확인절차)	11
제22조 (유지관리)	12
제23조 (임대 및 운영사항)	13
제24조 (운영비)	15

제4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25조 (실질사업수익률)	15
제26조 (사용료)	15
제27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	16
제28조 (최초사용료)	16

제5장 불가항력의 사유

제29조 (불가항력 사유)	17
제30조 (책임부담)	18
제31조 (불가항력 발생통지)	18
제32조 (불가항력의 대책협의)	18

제6장 협약의 종료

제33조 (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18
제34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19
제35조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19
제36조 (상호 협의에 의한 중도해지)	20
제37조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	20
제38조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22
제39조 (중도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23

제40조 (해지시 지급금 등의 조정 및 결정) 23
 제41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24

제7장 분쟁의 해결

제42조 (분쟁의 해결) 25

제8장 비밀 유지

제43조 (비밀유지) 25

제9장 기 타

제44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협조) 26
 제45조 (공사에 관한 협약) 27
 제46조 (준거법) 27
 제47조 (언어) 27
 제48조 (서면통지) 27
 제49조 (본 협약의 효력) 28

부 록

부록 1. 수익률과 사용료의 산정 공식 29
 부록 2. 사업의 규모 30
 부록 3. 총사업비 31
 부록 4. 운영비 33
 4-1 제1회 변경(법인세율 인하 반영) 34
 부록 5. 예상운영수입 35
 5-1 제1회 변경(법인세율 인하 반영) 36
 부록 6. 현금흐름분석표 37
 6-1 제1회 변경(법인세율 인하 반영) 38

부록 7. 자금투입계획	40
부록 8. 해지시 지급금	41
부록 9. 보험가입계획	49
부록 10. 재무모델	50

별첨 : 공사에 관한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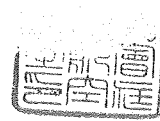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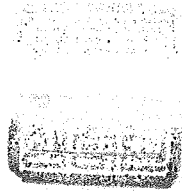
제1조 (공사의 도급)	51
제2조 (책임감리)	51
제3조 (공정관리)	52
제4조 (기성검사)	52
제5조 (설계 및 일반사항)	52
제6조 (토목시설)	53
제7조 (건축시설)	54
제8조 (기계설비 시설)	55
제9조 (전기설비 시설)	56
제10조 (통신설비 시설)	58
제11조 (소방시설)	60
제12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관한사항)	60
제13조 (도면작성 및 제출)	61

실시협약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와 (주)대한항공은 2005년 1월 18일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 협약한다.

- 2005년 1월 18일 실시협약 체결

- 제1회 변경(2015. 3. 31) : 2008. 12. 26 및 2011. 12. 31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반영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① 본 실시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이하 “제2화물터미널”이라 한다) 민간투자시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한민국(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과 (주)대한항공 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와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른다.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A동 동측나대지 420m x 130m중 동쪽끝단 210m x 130m
대지면적	25,137,128.4m ²
건축면적	29,724.38m ²
연 면 적	35,461.19m ²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주요구조	철골구조

제2조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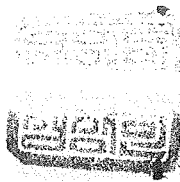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 :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리자로서 본 사업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7171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사기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본 시설물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본 시설물의 최종 준공확인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 공사착수일 : 본 협약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착공계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법률 제6836호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6.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제2화물터미널 시설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7.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8.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701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9.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928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0. 본 시설물 :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시설을 말한다.
11. 본 사업 :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의 건설과 운영을 의미한다.
12.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3.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주)대한항공을 본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14. 본 협약 : 대한민국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5. 협약 당사자 : 대한민국과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16. 불가항력 : 협약 당사자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서 협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를 말한다.
17.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4. 3. 12.일자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제출한 제2화물터미널 사업계획서 및 부속도서를 말한다.
18. 사업수익률 : 본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협약당사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기본계획 상의 사용료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등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9. 사용료 : 사업시행자가 제2화물터미널 시설물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를 의미한다.
20. 소비자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더 이상 공시되지 않을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2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대한민국법률 제689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이하 수촉법 이라 칭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2.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3.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4. 연체이자율 : 본 협약에 의한 지급의 이행 지체가 있을 경우 그 의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으로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신용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
25. 운영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6. 운영개시일 :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시설물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고 관리운영권을 실행받아 운영을 개시하는 날을 의미한다.
27.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민국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 존속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28.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9. 자금차입계약 :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과의 자금차입을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30. 제반공급시설 : 본 시설물과 관련되어 설치될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송수, 열공급 등 제반공급(유틸리티)시설을 말한다.
31. 제2화물터미널 : 본 협약에 의거하여 건설된 시설을 의미하며, 항공기에 하역하기 위해 화물을 보관 또는 분류하기 위한 작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2. 제3자제안공고 : 항공안전본부공고 제2004-8호(2004.6.9)에 의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를 말한다.
32. 총사업비 :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부록 3에 명기되어 있는 비용을 말한다.
33. 화물수요 :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착 및 출발되는 화물의 수요를 의미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주)대한항공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 ①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시설물 설계와 건설
- ② 제1항의 건설을 위한 부지의 무상사용
- ③ 제1항에 따라 건설된 본 시설물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사용
- ④ 관리운영권에 의한 제3항의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운영과 사용료의 징수

제4조 (무상사용기간)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 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19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동안 제3조 제4항의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본 시설물의 귀속)

본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운영기간 중에 취득한 설비 및 자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6조 (위험부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화물수요 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의무와 권한)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약 및 관련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관청은 사업기간동안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의 관리운영권 양도·양수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실시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않는 한 2004년 2월 28일 불변가 기준 44,906백만원으로 한다. 그 내역은 부록3과 같다.

제9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본 협약 체결이후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계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무관청의 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2. 주무관청이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하고 이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을 인정하는 경우(단,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서상 설계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지적사항은 제외)
 3. 세법 등 법규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③ 위 제1항에 의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사용료 또는 무상 사용기간 조정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본 협약 및 협상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

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행정절차 추진)

민간투자법 제16조에 의한 행정절차 이외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통보후 6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계를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주무관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초 공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4조 (건설사업이행보증)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따른 건설사업이행보증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 (지체상금의 납부)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의 완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의 완공기일의 익일부터 실제완공일까지 1일당 미완공분 순공사비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무관청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 제13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인정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일수는 연장된 완공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완공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시설설치 완료기한)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2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 장비의 설치 등 시설설치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조 (권한의 위탁 또는 대행)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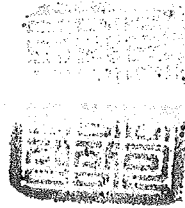
1. 감리자의 지정

2. 본 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3. 본 사업시행에 관한 준공검사
4. 공사 중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의 지시
5. 공사시행에 관한 모든 지도·감독사항
6. 본 사업시설의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항
7. 기타 본 협약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된 사항

제 18조 (보험가입)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부록9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9조 (민원처리)



본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제 20조 (공사중 안전관리)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승인내용과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제 21조 (준공확인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 1개월 전까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의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입회하에 감리자로부터 예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후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한 공사준공검사 신청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준공검사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준공검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시는 준공확인필증을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화물터미널에 대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운영개시일, 최초사용료, 기타 필요사항 등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본 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유지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동안 본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유지지침서가 첨부된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말 다음 년도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준공도,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와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관리대장

(건축분야)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수시로 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각종 설계도서(원본)를 주무관청의 도면관리에규를 준용하여 관리 후 인계하고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⑦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열람 복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임대 및 운영사항)

- ① 사업시행자는 제2화물터미널시설 본래의 용도 외에 타 용도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 ② 제2화물터미널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제2화물터미널 시설은 임차 및 사용을 희망하는 관련기관 및 업체 모두에게 기회 및 조건을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제2화물터미널 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시설사용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시설사용기간 및 당해 영업권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에게 자신의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시설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화물터미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시설사용자가 영업수행상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영업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의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적의무 시설(급수, 위생(흡연실), 소화, 전기 및 기타시설(휴게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제2화물터미널 시설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화물터미널 시설 운영실태를 파악 조사케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나 시설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운영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시설물의 준공도면의 변경이 요구되는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사용자가 ICAO규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익자부담 경비원칙에 의하여 경비감독기관이 정하는 소요의 청원경찰을 직접 임용하여 근무배치 및 감독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영비)

- ① 토지사용료를 제외한 운영비는 2004년 2월 28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33,960백만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부록4와 같다.
- ② 본 사업을 위한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개시일전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본사업 부지사용에 대하여는 공항시설관리규칙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하며, 납부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물의 준공검사신청일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주)대한항공이 체결한 토지임차계약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④ 운영기간 중 법인세 등 관련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는 무상사용기간 또는 사용료 조정을 통해 반영한다.



제 4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25조 (실질사업수익률)

본 협약에 의한 사용료 등의 산정을 위해 적용할 수익률은 세후 실질수익률 (IRR) 6.95%(세전실질수익률: 8.74%, 2004.2.28 불변가 기준)로 하고 무상사용기간 중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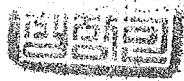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동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년도에 대한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2008. 12. 26 및 2011. 12. 31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은 제24조 제④항에 의거 사용료로 조정하며, 그 내역은 부록 5-1과 같다.

제27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

- ①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에 관련된 사항은 부록1의 함수관계식에서 산정한다.
- ② 공사시행중 또는 완공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제9조 및 정부귀책사유



2.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정부가 부담할 부분

제28조 (최초사용료)

최초의 사용료는 부록1의 산식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60일 전까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3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최초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사용료는 2004년 2월 28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부록5와 같다.
- 2. 최초사용료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률은 부록5의 사용료에 운영개시일 직전 분기말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부록1의 사용료 산정 산식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총사업비의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4. 제26조 제③항에 따른 사용료의 현재가 산정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관청에 신고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5 장 불가항력의 사유

제29조 (불가항력 사유)

협약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불가항력 사유는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정된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전반의 파업
3.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전반적인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들)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정된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민간투자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제30조 (책임부담)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불가항력 발생통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동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불가항력의 대책협의)

주무관청은 제31조에 의한 통지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개시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책** 및 이에 대응한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협약의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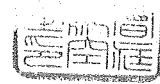
제33조 (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치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해지는 상기 기간 만료일(이하 “해지일”이라 한다)에 해지된다.

1. 민간투자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의 건설이 100일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또는 운영이 30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제34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주무관청에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치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약은 해지일에 해지된다.



1.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의 건설공사가 100일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또는 운영이 30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가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제35조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해지)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불가항력 사유를 치유 또는 개선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절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제3항에 의한 협약해지의 통지 이전에 본 협약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본 협약을 종료시킬 것인지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3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거나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약은 동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된다.

1.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공사가 100일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30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2.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가 현저히 증가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6조 (상호 협의에 의한 중도해지)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기간 중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본 협약으로 정한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권리 및 권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부채 등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한다.

제37조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33조 내지 제36조에 따라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제4조(무상사용기간)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협약종료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와 의무도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협약종료 6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종료와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관리운영사무를 주무관청에 인계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및 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제1호에 의한 점검 실시 후 협약종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인수확인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반환요건과 다르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주무관청이 통지한 거부사유와 근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약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통지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이의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의의 통지가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제7장(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5. 제3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유가 치유되거나 협약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어 주무관청이 인수확인서를 발행할 때까지, 본 사업시설 운영관리는 제38조(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 규정) 제4항을 준용한다.
6.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사무 인계시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시설운영자료 및 도면, 운전매뉴얼과 교육교재를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자에게 시설 운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 (협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종료시, 본 사업시설 및 관리운영사무의 원만한 인계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시행하여 주무관청에 이를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자금차입계약(들) 등 모든 계약을 주무관청(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승계할 수 있으며, 만약 주무관청이 해당 계약을 승계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승계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에 의해 설정,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책임, 무상사용기간 등이 종료된다. 다만,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약당사자간에 기발생된 의무사항은 동의무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④ 운영기간 중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이 본 사업시설 및 관리운영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주무관청의 관리하에 본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본 사업시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시공도면 등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물(영상물, 필름 등)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39조 (중도해지시 지급금 산정 및 지급의 일반원칙)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부록8(해지시 지급금)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부록8(해지시 지급금)의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단,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선정치 못한 경우에는 제7장(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하여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할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일방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 ⑤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 ⑥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지급하며, 늦어도 익년도 6월말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익년도 7월1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 (해지시 지급금 등의 조정 및 결정)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부록8(해지시 지급금)에 의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부록8의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 ① 제33조(중도해지)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협약의 중도해지를 통지한 경우 또는 대주단의 임의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간의 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대주단(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대체사업자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해지일까지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대체사업자 지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한다. 주무관청은 대체사업자가 본 협약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유지, 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금조달, 기술능력을 검토할 수 있다.
- ③ 대체사업자는 지정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인수하며 지정일 이후 본 협약에서 사업시행자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경우, 주무관청 및 대체사업자는 그 대체사업자가 지정일에 존재했던 협약중도해지사유 또는 자금차입계약(들) 상의 채무불이행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에 대하여 합의한다.

- ④ 주무관청과 대체사업자는 본조의 규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제 7 장 분쟁의 해결

제42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지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로 한다.

제 8 장 비 밀 유 지

제43조 (비밀유지)

-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방 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 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 9 장 기 타

제44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협조)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외 유행을 주간사 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본 사업 수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채금융자금차입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대주단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으며, 등록된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⑤ 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금제조달시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 (공사에 관한 협약)

공사에 관한 협약사항은 별첨 "공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3항까지와 같다.

제46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47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본을 정본으로 한다.

제48조 (서면통지)

- ①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상대방의 수취 확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 ②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문서의 통지나 송달은 아래의 주소로 이루어진다.

1. 국가에 대한 통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참조 : 공항지원과

전화 : 032 - 740 - 2227

팩스 : 032 - 740 - 2239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주식회사 대한항공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193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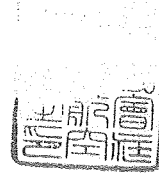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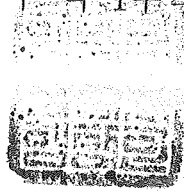
참조: 화물운송부

전화: 032 - 742 - 3482

팩스: 032 - 742 - 3469

제49조 (본 협약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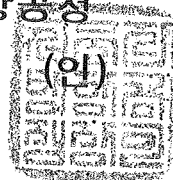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15. 3. 3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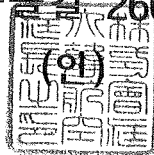
청 장 황 성 연 (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대표이사 지 창 훈 (인)



부록 1. 수익률과 사용료의 산정 공식

사용료 산정은 아래의 함수관계식을 기준으로 한다.

$$\sum_{t=1}^n \frac{CC_t}{(1+r)^t} = \sum_{t=1}^N \frac{(OR_t - OC_t)}{(1+r)^t}$$

여기서,

n : 시설의 준공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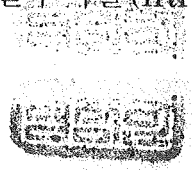
N :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점

CC_t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다만, 국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OR_t : 매년도 운영수입

OC_t : 매년도 운영비용

r : 본 사업의 실질수익률(IRR)



부록 2. 사업의 규모

[표 2-1] 시설규모

(단위:m²)

구 분	면 적	비 고
건축면적	29,724.38	
연 면 적	35,461.19	
지하 1층	2,273.47	
지상 1층	27,658.08	
지상 2층	904.03	
지상 3층	1,844.61	
지상 4층	1,861.27	
지상 5층	919.72	
계	35,46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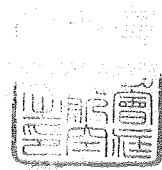
부록 8. 해지시 지급금

부록 8.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부록 8.2 정부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부록 8.3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부록 8.4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부록 8.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8.1.1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기투입 민간투자비”라 함)

8.1.2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정율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율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 상각비 = (민간투자자금 - 상각누계액) × 상각율
- 상 각 율 = $1 - (\text{잔존가액} / \text{민간투자자금})^{(1/\text{무상사용기간})}$
- 잔존가액 = 민간투자자금의 5%

부록 8.2 정부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8.2.1 건설기간 중

“기투입 민간투자자비”와 경상사업수익률을 “기투입 민간투자자비”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경상사업수익률이란 본 협약에 정한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에 연도별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이율을 의미한다.

[경상사업수익률 산정 방식]

$$(1 + \text{사업수익률}) \times (1 + \text{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 - 1$$

8.2.2 운영기간 중

“본 시설의 잔존가치”(8.2.2.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8.2.2.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8.2.2.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8.2.2.1호의 금액)



[해지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8.2.2.1)\text{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1 - \text{잔여운영기간비율}) + \\ (8.2.2.2)\text{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text{잔여운영기간비율}$$

8.2.2.1 “민간투자자자금”과 경상사업수익률을 건설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정부 귀책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자금”이라 함)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정율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정부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율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 상각비 = (정부 귀책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 - 상각누계액) × 상각율
- 상 각 율 = 1 - (잔존가액/정부 귀책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1/무상사용기간)
- 잔존가액 = 정부 귀책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의 5%

8.2.2.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의 효력발생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사용료수입 대비 실제사용료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추정사용료수입 대비 실제사용료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사용료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left(\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사용료수입}}{\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 추정사용료수입}} \right) \times \left(\frac{3}{6} \right) +$$

$$\left(\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사용료수입}}{\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사용료수입}} \right) \times \left(\frac{2}{6} \right) +$$

$$\left(\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사용료수입}}{\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사용료수입}} \right) \times \left(\frac{1}{6} \right)$$
-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사용료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사용료수입의 합}}{\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별 추정사용료수입의 합}}$$

부록 8.3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8.3.1 건설기간 중

“기투입 민간투자자비”와 표준차입이자율을 “기투입 민간투자자비”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표준차입이자율이란 국고채(5년 만기) 유통수익률의 연도별 평균값에 2퍼센트(2%)를 합산한 이율을 의미한다.

8.3.2 운영기간 중

“본 시설의 잔존가치”(8.3.2.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8.3.2.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8.3.2.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8.3.2.1호의 금액)

[해지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8.3.2.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1 - 잔여운영기간비율) + \\ (8.3.2.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잔여운영기간비율$$

8.3.2.1 “민간투자자자금”과 표준차입이자율을 건설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자금”이라 함)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정율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율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 상각비 =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자금 - 상각누계액) × 상각율
- 상 각 율 = $1 - (\text{잔존가액} / \text{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자금})^{(1/\text{무상사용기간})}$
- 잔존가액 =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자금의 5%

8.3.2.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의 효력발생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사용료수입 대비 실제사용료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추정사용료수입 대비 실제사용료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사용료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left(\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사용료수입}}{\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 추정사용료수입}} \right) \times \left(\frac{3}{6} \right) +$$

$$\left(\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사용료수입}}{\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사용료수입}} \right) \times \left(\frac{2}{6} \right) +$$

$$\left(\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사용료수입}}{\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사용료수입}} \right) \times \left(\frac{1}{6} \right)$$

•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사용료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사용료수입의 합}}{\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별 추정사용료수입의 합}}$$

부록 8.4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8.4.1 건설기간 중

기투입 민간투자비와 표준차입이자율과 경상사업수익률의 평균 이율에 의하여 “기투입 민간투자비”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8.4.2 운영기간 중

“본 시설의 잔존가치”(8.4.2.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8.4.2.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다만, 가중평균한 금액이 8.4.2.1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8.4.2.1호의 금액)

[해지시 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8.4.2.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1 - 잔여운영기간비율) + (8.4.2.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times 잔여운영기간비율$$

8.4.2.1 “민간투자자금”과 표준차입이자율과 경상사업수익률의 평균 이율을 건설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정율법으로 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에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정치적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해지시 정율법에 의한 상각방식]

- 매년도 상각비 =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 - 상각누계액) × 상각율
- 상 각 율 = $1 - (\text{잔존가액} / \text{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1/\text{무상사용기간})}$
- 잔존가액 =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발생시 민간투자자금의 5%

8.4.2.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단가적용일로부터 해지의 효력발생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의 효력발생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사용료수입 대비 실제사용료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추정사용료수입 대비 실제사용료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사용료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left(\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 실제사용료수입}}{\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 추정사용료수입}} \right) \times \left(\frac{3}{6} \right) +$$

$$\left(\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사용료수입}}{\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2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사용료수입}} \right) \times \left(\frac{2}{6} \right) +$$

$$\left(\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실제사용료수입}}{\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3년 이전 사업년도 추정사용료수입}} \right) \times \left(\frac{1}{6} \right)$$

-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사용료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frac{\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별 실제사용료수입의 합}}{\text{해지의 효력발생일 직전 사업년도별 추정사용료수입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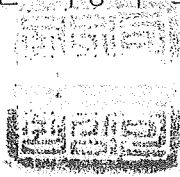
부록 10. 재무모델 (CD 1set)



공사에관한협약

제1조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실시계획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따른 감리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기성부분중 체불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책임감리)

- ① 공항공사 사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로 하여금 본 제2화 물터미널의 공사에 대하여 동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사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감리기성실적(매 3개월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리기성지급일전까지 예치하고 그사실을 공항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항공사는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 (공정관리)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 및 공항공사의 공정관리절차서에 따라 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와 공항공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설계 및 일반사항)

- ①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심의를 신청하거나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를 경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작성·제출기준은 동 협약 10조에 의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공사에서 시행중인 세부평면배치계획 내용에 부합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설계내용 및 주무관청과 협의된 내용 및 공항공사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관리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 제작, 설치, 시공 등 모든 업무범위에서 국제품질 규격인 ISO 9001 또는 KSA 9001 품질시스템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한 후 이에 따라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공항공사는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물 건설을 위한 지원시설용 부지, 자재수급과 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공항공사에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

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전 공항공사의 전체시설물과의 종합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인 공항시설에 대한 설계이므로 조사내용,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⑧ 본 시설물 건설에 따른 공사범위는 건물외벽 외측 경계선으로부터 부지밖으로 3M까지로 한다. (단, 건물외벽이 캐노피 형태로 구성된 경우에는 캐노피 끝선으로부터 1M까지로 한다.)
- ⑨ 협약에 따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항공사에서 수행한 부대건물 관련설계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6조 (토목시설)



- ① 건물의 위치가 확정되면 공항공사에 건물좌표를 제시하여 도로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시설물과 공사에서 시행하는 주변 포장공사와의 업무분담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 오수는 공항공사에서 주간선 우수관로상의 맨홀에 연결 배출시켜야 하므로 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양, 수질의 특성, 배출관로의 관경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항공사에 제출하여 주간선 우수관로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규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전량 완전처리하여 주변 배수로에 연결 방류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화물터미널 주기계획 : 화물터미널 건물형태 및 주기계획은 당초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1 Moudule당 4대의 E급 항공기를 주기하는 것으로 계획 되었으니 사업시행자는 이를 기준으로 본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 ⑤ 화물터미널 배수계획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 주변지역에 계획 또는 시공된 간선 및 지선 배수계획을 기준하여 건물의 우수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확정된 건물주변 집수정 위치까지 배수관로를 연결하여야 한다.
- ⑥ 기초 슬래브 설치전에 이 지역에 연약지반처리 시행으로 압밀 처리를하여 장기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본 시설물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조경수종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건축시설)

- ① 본 시설물의 위치결정에 있어 건물로 인한 ILS에 전파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건물의 입면 및 색채계획은 공항전체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외부시각디자인(Signage & Graphics) 설계시에는 공항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Signage & Graphics 설계지침에 근거하여 설계하고, 세부실시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건물의 마감자재에 대하여는 광선이나 전파의 난반사 등으로 인해 공항운영

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건물 설계시에는 공항공사의 염해방지 관련 시방서를 준용하여 염해에 충분히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 ⑥ 건물의 구조는 매립지반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완벽한 지반조사를 근거로 설계하고, 특히 발생가능한 지진에 충분히 대처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기준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토록 한다.

제8조 (기계설비 시설)

- ①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건물의 주용도상 비상급수 및 중수 탱크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는 비상급수 및 중수탱크를 자체 또는 그룹별로 설치하고 건물에서 요구되는 양수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냉난방을 위하여 공급되는 열원수 중온수를 사용하며 본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냉난방 장치는 자체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단, 가스난방의 경우 200,000Kcal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 열원사용시 지역난방공급자와 협의 필요[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8조])
- ③ 사업시행자는 추후 공항공사와 상호 합의하에 결정될 열공급 배관설치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건물내에는 중수를 이용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각종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⑥ 각종 유틸리티의 연결은 공항공사에서 지정하는 연결지점에서 사업시행자가 설계 시공하되, 기존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장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접속맨홀의 슬리브 처리방법도 포함된다. 또한 연결사용

자재는 공항공사에서 사용한 자재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⑦ 본 시설과 다른 화물터미널 건물과의 유틸리티 연결은 관련 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는 이와관련 사업시행자간의 협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⑧ 가스배관은 사업시행자가 인천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주라인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본 관로의 유지보수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⑨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중온수, 중수, 급수) 계량기를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건물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⑩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의 사용료를 공항공사와 협의후 납부하여야 한다.(중온수 사용료는 열병합 사업자, 공항공사, 사용자와 협의후 확정)
- ⑪ 사업시행자는 냉동설비를 위한 CFC계 냉매와 소화설비를 위한 HALON 가스 사용을 지양하고 오존 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대체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⑫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 배관 재질을 선정함에 있어 시공 및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공항공사에서 사용중인 배관자재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부득이 종류가 다른 재질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전기설비 시설)

- ① 모든 전기설비는 공항기능의 충족성, 에너지절약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공항의 전력시설설계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수전설비는 신공항 전력계통에 부합되는 수전설비를 계획하되, 안전성, 경제성, 공급신뢰도를 고려하여 공항공사와 협의하에 설계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현재 운영시설인 화물터미널A 수전설비로부터 전력선로를 인출하여 수전(상시1회선,비상 1회선)하여야 하며, 시설확장시 전력공급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전설비를 고려하고, 여타 화물청사에 전력을 공급하기위해 사업시행자측 수전설비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인출용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자체 배전설비는 각각의 시설이 요구하는 공급신뢰도, 공급용량, 공급전압 등을 만족하는 계통으로 설계하되 배전설비의 배치등은 전력손실을 고려하여 부하의 중심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조명설비는 건물의 기능 및 분위기를 고려한 조명방식, 광원, 조명기구를 선택하여야 하고 대규모 복합기능 건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조명자동제어 방식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⑥ 설계시에는 우선적으로 단계별 전력수요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 공항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설계 및 신공항 단계별 전력공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수전설비는 단계별 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⑦ 건물 및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상용전원외에 예비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⑧ 공항공사가 계획하는 신공항 전력통합감시 및 제어시스템 구축과 연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2화물터미널의 전력감시정보가 공사시스템에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시설의 구성은 공항공사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⑨ 전력공급 및 공사시행 구분에 있어서 책임분기점은 화물청사지역 배전변전소 2차이며, 전기사고의 파급방지 및 계통보호 협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전력사용량 계량을 위한 장치(MOF 및 DM)는 사업시행자측 수전 설비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⑩ 공항종합정보통신센터(AICC), 공항소방대등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화물청사 운영정보, 경비보안, 화재탐지정보등은 동 시설 설계시 공항공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공항공사의 통신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 공항공사의 각종 통제실로부터 제2화물터미널의 건물외벽 중심선 3m까지의 LAN망 설치에 공항공사에서 시행한다.
- ⑪ 항공기 동력용 전원설비(400Hz Power Supply System)는 장래항공기의 동력 소요 및 공항의 환경오염을 감안하고, 각 항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운영계획에 따라 장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신설비 시설)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은 공항공사에 의해 통합 구축 및 운영될 것이므로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단, 각 법인의 고유한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은 통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① 외부망 관로 연결은 사업시행자가 검토, 협의를 통하여 해당사업자를 선정하고, 공항공사가 해당사업자일 경우에는 통신 유틸리티 연결은 공항공사에서 지정하는 연결지점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체 연결 인출하되 접속맨홀등의 슬리브 처리 방법등이 포함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항공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전화, 데이터, 전용선등을 연결하는 과업 범위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당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한다.
- ④ 공중전화 단말기는 외부 공중전화 사업자가 설치하므로 해당사업자와 협의하

여 배관 및 배선설계를 하여야 한다.

- ⑤ 화물터미널지역 데이터통신 서비스는 현재 외부통신사업자가 직접장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수행함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항공사 및 해당사업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영상통신시스템 설계시 해당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연계방안을 확정된 후 설계를 하여야 한다.
- ⑦ 공항공사에서 운영되는 영상통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영상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항 CATV 시청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공항 CATV 망과 연동될 수 있도록 수신측에 호환되는 장비와 관로, 선로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⑧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을 요하는 시설 또는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경비보안 마스터플랜 및 기 설치된 보안시스템을 고려하여 연계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⑨ 공항공사에서 운영중인 보안센터 및 타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중인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시 공항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⑩ 경비보안시스템은 보안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항공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CCTV, 출입통제시스템, 통신시스템등이 향후 공항공사의 시스템과 연계성 및 확장성이 필요한 경우에 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인터페이스 가능한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⑪ 외곽지역에 설치되는 장비는 설치지역의 특수성(염분, 해풍등)을 감안하여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 11조 (소방시설)

- ① 인천국제공항의 소방시설 통합감시체계와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성 시행하여야 하며 방재시스템 연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규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인·허가 사항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소방시설은 소방법 및 국내외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④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협회, 화재보험협회, 인천광역시 소방담당등 관련기관의 자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12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관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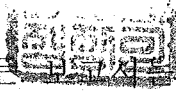

- ① 사업시행자가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설치시에는 관련법규 및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설치기준을 따라야 하며, 계획수립 및 설계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환경감시시스템(TMS)이 운영중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되는 배출가스, 수질 및 소음에 대한 측정·감시가 가능한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공항공사 TMS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오염물질을 공동처리장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일 경우에는 환경오염배출시설에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공항공사 TMS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④ 환경오염방지시설(오염물질을 공동처리장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포함)의 측정장비에서 생산되는 DATA를 전송하기위한 유선 또는 무선회선 및 모뎀등을 확보하여 공항공사의 전송방식에 맞도록 전송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의 건설 및 운영시 인천국제공항건설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동 내용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등 협의내용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⑥ 운영시에는 해당시설에서 생성되는 운영정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량 및 위험물질, 유해물질 관리정보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조(도면작성 및 제출)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은 물론 운영과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과정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 관리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통일화하고 이를 Data Base로 구축,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설계도면합기준서와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설계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대한 신공항건설심의 신청일 이전에 본 협약내용에 따라 작성한 실시설계도서(90%)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검토의견 및 신공항건설심의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Rev.A)를 신공항건설심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실시계획승인 신청일 전까지 공사용 설계도서(Rev.0)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항공사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또는 문서 등은 다음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1) 동 기준서에 없거나 신규 발생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한다.

- 2) 사업시행자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CAD System(Auto CAD)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하드카피와 함께 동자료를 전자파일 형태(CD-ROM 저장매체)로 제출하되 동자료는 공항공사의 CAD System (공항공사는 Auto CAD 사용중임)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본 사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도면은 벡터자료로, 외부 참고자료는 라스터 또는 벡터자료로 제출하되, 벡터자료는 *.DWG 화일 포맷으로, 라스터자료는 TIFF 화일 포맷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 4) 지형도 입력사항 및 기준은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7호 : '95. 5. 29)에 의거 표준코드와 표준도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도형 데이터는 도면의 종류와 레이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번호체계 절차서 및 설계통합기준서 참조)
 - 6)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보고서와 함께  을 수록한 전자파일(CD-ROM등 저장매체에 수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하되, 공항공사가 사용하는 Word Processor(공항공사는 MS-OFFICE[doc,xls,ppt], XML, PDF, TIF사용)와 호환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전자파일은 자료파일 목록을 포함한다.
 - 7)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Data Base화 하였을 경우에는 동 자료를 CD-ROM등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동 기억장치와 목록 및 테이블을 제출한다.
- ③ 기타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끝.